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26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redacted]재단
피고, 피항소인	[redacted]특별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2. 선고 2014구합5805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20.
판 결 선 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9. 5. 원고에게 한 감면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의 "라. 판단" 중 "(2) '이 사건 병원이 대학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지'에 관하여"에 대한 판시의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시 부분

"(원고가 정관상 이 사건 병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한 것은 현재 원고 산하에 의과대학이 없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거나 장차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점에 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정상규

판사 허일승